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기간 연장〉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00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직무발명제도 및 관련 사업 현황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7.
3. 회부연월일 : 2025. 3.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 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간 또한 지나치게 짧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종업원 등의 분쟁조정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심의회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제18조 제1항제7호)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생략)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u>사유가 발생한</u> 날부터 <u>30일</u>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u>30일</u>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 ---- <u>사유를 안</u> ----- <u>60일</u> ----- ----- ----- ----- <u>60일</u>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¹⁾에 대한 권리·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²⁾과 사용자등³⁾의 이견 조정 등 심의를 위해 사용자등으로 하여

1)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금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제17조4),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8조5).

그런데, 종업원등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제18조제1항)되어 있어 심의

-
- 2)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 3)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4) 「발명진흥법」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발명진흥법」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요구의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간 또한 지나치게 짧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심의회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행사 기한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종업원등의 분쟁조정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표 2]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해결 방안

구 분	내 용
사내 직무발명심의회위원회 (발명진흥법 제17조)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사용자위원 및 종업원위원 각각 3명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 -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 공동위원장 가능 · 법적 구속력 없으며, 불복 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가능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⁶⁾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 ·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둠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되고, 해당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민사소송	· 법원에서 직무발명 보상, 권리 귀속, 계약 위반 등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구함

6)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발명 분쟁 조정신청 건수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신청건수(직무발명)	5	8	2	7	11

자료: 특허청

현행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제1호), ‘사용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제2호),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제3호) 등으로 종업원등이 해당 사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기산점을 ‘사유가 발생한 날’에서 ‘종업원등이 해당 사유를 안 날’로 변경함으로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산점이 보다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고,

기산점으로부터 ‘30일’ 동안 요구할 수 있던 것을 ‘60일’ 동안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종업원등의 권리 보호가 보다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산점을 ‘사유를 안 날’로 변경하는 경우 기간의 지연으로 사용자등의 법적 불확실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기간까지만 적용하는 제척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특허청 의견⁷⁾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458

-
- 7) 특허청은 직무발명심의회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기산점을 변경하는 것과 기간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기산점을 '사유를 안 날'로 변경하는 경우 유사입법례(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를 고려하여 3배 수준(예. 180일)의 제척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참고

직무발명제도 및 관련 사업 현황

□ 직무발명제도(발명진흥법§10~19)

- (개요)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혁신발명을 촉진토록 하는 제도

* 직무발명: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발명자주의·사용자주의 특징 및 직무발명제도 효과 >

발명자주의	VS	사용자주의	⇒	직무발명제도
우수발명 창출		기술발전 촉진		혁신발명 촉진
발명의욕 고취		기업이익 확대		인센티브 + 경영이익
정당한 보상문화		안정적인 권리승계		산업발전

- (관련 법령) 발명진흥법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 신고, 사용자의 권리승계 및 정당한 보상 등 직무발명 관련 절차·의무 등*을 규정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근거 규정 포함

□ 특허청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 (개요)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컨설팅, 인증제도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이 직무발명규정을 도입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기업 설명회	175	157	175	175	160	170
맞춤형 컨설팅	150	150	278	278	254	384
인증제도 운영	40	40	40	40	40	100
계	365	347	493	493	454	654

- (효과) 규정 보유시, 기업은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종업원은 혁신발명을 지속 창출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구분	주요 효과
보유시 (긍정적)	①기업의 안정적인 권리승계 가능, ②직무발명 불승계 경우라도 기업에 법정 통상실시권 부여, ③정당한 보상으로 종업원의 혁신발명 창출 촉진 ⇒ 기업 경쟁력 제고, 발명자 정당한 보상 가능
미보유시 (부정적)	①핵심기술의 외부유출(종업원→타 기업), ②우수 직무발명의 강탈(기업이 보상 않음) 및 이에 따른 소송 발생 등 우려 ⇒ 기업 경쟁력 하락